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24 선고 2021가단112886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최경진, 정민화)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암(담당변호사 김수창)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10,000원 및 그중 10,890,000원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그중 14,520,000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그중 36,20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등의 대절 관련 가격 비교 및 대절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하여 2019. 3. 11. 피고와 ‘앱 서비스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는 ① 기존에 제공되던 다른 업체의 유사 서비스(C, D, E, F 등)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제2조 제2항 B), ② 피고는 계약 체결 후 2개월 동안 개발하여 결과물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약정 기간 내에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하면 지연 일수당 총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하며(제5조 제1항, 제6항), ③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총 3,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착수금 1,089만 원은 2019. 3. 11., 중도금 1,452만 원은 2019. 4. 26., 잔금은 납품 후 7일 이내에 각 결제한다(제6조)라고 각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업무담당자는 원고의 업무담당자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원고의 요청 사항에 따라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 작업을 진행하였고, 한편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6. 28.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1,089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② 2019. 10. 15.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452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에도 피고의 업무담당자는 2021년 초반까지 원고의 업무담당자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세부적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개발이 이처럼 당초 약정과 달리 상당 기간 지연되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1. 3. 15. 피고의 대표자(G)에게 개발 지연 및 피고의 작업 태도에 대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5. 12.에는 “확실한 완성 일자를 정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5. 25.에는 “2019년 3월 11.일 당시 2개월이면 가능하다고 계약하였는데 현재 2021년 5월 5.일까지 정상적으로 개발된 것은 한 가지도 없고, 2년 3개월 동안 항상 담당자 부재 등의 말로 원고측을

기만하여 스트레스가 심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의 대표자는 2021. 5. 27.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많이 노력하여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잦은 수정변경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누구도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잔금은 받지 않는 대신 새로운 개발자나 팀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러자 원고의 업무담당자는 2021. 5. 31. 피고의 대표자에게 “현재 원고가 납부하는 서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0일경 납부를 중단한다. 그 전에 작업 결과물이 서버에 있으면 따로 백업해서 보관 요청 드리고, 메일로 보내줄 수 있으면 메일로 전송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약정 기한(2019. 5. 10.)까지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2021. 5. 27.경에는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까지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및 중도금 합계 2,541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6항에 따른 지체보상금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3,6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앞서 확정되어야 할 사업 방식 및 내용, 어플리케이션의 스토리보드(기획서)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보드 및 개발 계획,

구체적인 기능디자인 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변경 요구를 하였는바, 원고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 작업이 지연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는 꾸준히 개발 작업을 수행하여 상당한 정도로 이 사건 목적물을 개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작업 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일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 도급인은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완성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행 최고 및 그에 뒤이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개발 기한은 계약 체결일(2019. 3. 11.)로부터 2개월이었는데1), 그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2021. 6. 29.)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은 당시까지 여전히 여러 부분에 걸쳐 완성되지 않았다(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전세버스’ 서비스의 개발에 먼저 착수하였고, ‘통근버스, 공항버스, 맞춤버스’ 서비스는 전세버스 서비스의 개발 완료 후 착수하기로 하였는데, 감정인 H은 ‘전세버스’ 서비스의 개발 완성을 74.64%, ‘통근버스, 공항버스, 맞춤버스’ 서비스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개발 완성을 37.32%로 각 감정하였다).

- 원고의 업무담당자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이메일을 통하여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2021년 5월경에는 원고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개발 지연에 대해 항의하면서 완성 예정 시기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명확한 완성 예정 시기를 원고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21. 5. 27.에는 개발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피고가 용역대금 잔금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개발자를 통해 일을 완성하는 방안”을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21. 6.경 개발 작업에 필요한 서버에 대한 비용 납부를 중단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투면서도 정작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 작업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중단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와 다른 업체 사이의 경쟁 관계,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한 초기 수요자 확보의 필요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기술 발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이 적시에 완료되었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설령 당초 약정한 개발 기한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온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무렵에는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적어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및 중도금 액수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수청구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착수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지금까지 개발된 이 사건 목적물을 현재 상태 그대로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하였는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불과한 피고가 이처럼 원고를 위해 사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식(비즈니스 모델)을 피고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설명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이 갖추어야 할 전체 기능과 구조메뉴디자인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항목 역시 스토리보드(기획서) 등의 형태로 사전에 명확히 규정확정되어 피고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개발 착수는 스토리보드 완성 후 상호 확인 후 진행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업무담당자가 개발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련된 세부적 항목들을 스스로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C, D, E, F 등) 내용을 참조하여 일단 개발에 착수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개발 작업 이외에 원고의 사업 방식 및 구체적인 요청 사항(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구조, 예약결제 등 개별 기능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 메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방식, 어플리케이션 각 메뉴 및 아이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을 원고에게 일일이 확인해 가며 개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도 내부적 논의를 거쳐 사업 방식 및 어플리케이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수정변경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 스스로 자신의 사업 방식 및 어플리케이션이 갖추어야 할 최종적인 기능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이

지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인다(물론, 피고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개발한 기능의 오류 및 오작동, 개발 인력에 대한 피고의 관리 소홀 역시 개발 지연의 이유가 되었다고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를 감정한 감정인 역시 “다른 회사의 서비스명을 막연하게 적시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는 사업 기획서 혹은 서비스 기획서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원하는 유사한 서비스명만 이 사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을 뿐 원고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시나리오는 정리된 형태로 원고가 제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의도를 세부적인 부분까지 간파하기는 힘들고 사업에 대하여 책임질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하여 피고가 정리하여 원고에게 제안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전세버스’ 서비스에 대한 개발에 먼저 착수하였고, ‘통근버스, 공항버스, 맞춤형버스’ 서비스는 전세버스 서비스의 개발 완료 후 착수하기로 하였는데, 감정인은 ‘전세버스’ 서비스의 개발 완성도를 74.64%, ‘통근버스, 공항버스, 맞춤형버스’ 서비스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개발 완성도를 37.32%로 각 감정하였다. 그렇다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전세버스’ 서비스의 개발은 상당한 정도까지 진척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앞서 보았듯 원고 스스로 자신의 사업 방식 및 어플리케이션이 갖추어야 할 최종적인 기능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개발이 지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이는바, ‘전세버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사업 방식 및 어플리케이션의 최종 기능디자인 등의 상당 부분이 확정된 이상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과정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후 ‘통근버스, 공항버스, 맞춤형버스’ 서비스 개발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통근버스, 공항버스, 맞춤형버스’ 서비스 개발에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착수하지 못한 ‘통근버스, 공항버스, 맞춤형버스’ 서비스가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정인과 같이 ‘50%’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평가라고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착수금의 지급기일은 ‘2019. 3. 11.’, 중도금의 지급기일은 ‘2019. 4. 26.’으로 각 약정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일단 개발에 착수해 줄 것을 의뢰한 후 진행 경과 및 결과물을 수시로 검토하면서 2019. 6.경에 착수금, 2019. 10.경에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이로써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총 용역대금의 70%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9.

10.경까지는 적어도 착수금 액수 상당의 개발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고는 2021. 5.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개발 작업을 수행하여 '전세버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약 75%의 완성도에 이르는 결과물을 얻어내었다.

-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 목적물 중 일부 기능이 여전히 구현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하나, 미완성오동작 부분의 내역 및 상황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추가보완에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현재까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원고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원고의 특별한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것으로서 원고가 그 결과물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로서는 그 결과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 이처럼, 원고와 피고가 개발 작업을 진행하여 온 경위와 방식, 원고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원고의 용역대금 지급 경위, 이 사건 목적물의 완성도 및 현재의 결과물을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 피고가 현재까지 투입한 인력시간,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계약해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 원고의 지체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완성이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체보상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자신의 사업 방식 및 어플리케이션이 갖추어야 할 최종적인 기능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목적물의 개발이 지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개발 지연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개발 기간 2개월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는 지체보상금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채 피고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오랜 기간 이루어진 개발 과정에서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체보상금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지체보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1)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 후 3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2개월’이라 주장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는 않았다.